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(주)한국청정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우너구 제일로 55, 106호 (전화번호: 02-3158-4752)			
건축물	건물명 덕은초등학교	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76번길 18-4		
	연면적(m <sup>2</sup> ) 4,152.72m <sup>2</sup>	작업기간 2019. 01. 18	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<sup>2</sup> )·부피(m <sup>3</sup> )] 3,091.2m <sup>3</sup>			
측정기관	대표자 박석현	사업자등록번호 141-81-33761		
	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 34번지 4F 402호 (주)국토석면환경연구원			
측정 일시	2019. 01. 18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석면
	별첨		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별첨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9년 01월 18일

제출인

(주)한국청정 (인)

**고양시장**

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 ● 측정결과

•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1) 2019년 1월 18일

측정일시	시료번호	측정지점	측정결과	초과여부
2019년 01월 18일	A - 1	부지경계선	0.003	기준미만
	A - 2		0.001	기준미만
	A - 3		0.002	기준미만
	A - 4		0.001	기준미만

## ●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- 2019년 01월 18일



<첨부 1> 석면 해체·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

항목	석면비산정도 측정		
측정시간	시작 10 : 00	종료 14 : 00	통보 20 : 30
투입장비	종류 SARA -5100	수량 4ea	
촬영대상	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※ 석면 비산 측정 시기,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 「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」 참고)		

구분	사진		사진설명
부지경계선			부지경계선
	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: 학교기준 동 서 남 북 각 1ea	분석결과(기준 0.01개/cm³ 이하): 0.003, 0.001, 0.002, 0.001	작업일 ( 2019.01.18.)
위생설비1	측정없음	측정없음	
	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:	분석결과(기준 0.01개/cm³ 이하):	작업일 ( . . )
위생설비2	측정없음	측정없음	
	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:	분석결과(기준 0.01개/cm³ 이하):	작업일 ( . . )
해체·제거 사업장 주 변 실내	측정없음	측정없음	
	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:	분석결과(기준 0.01개/cm³ 이하):	작업일 ( . . )



● 석면조사기관 지정서

제2015-120003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관명	주식회사국토석면환경연구원	
소재지	(413-826) 경기도 파주시 금정4길34 (금촌동, 4층) ()	
대표자성명	박석현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5. 7. 10

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



● 석면조사자 교육증 사본



제 K.S13-66-0009 호

수 료 증

소 속 : (주)국토석면환경연구원  
성 명 : 박석현  
생년월일 : 1979년 9월 4일생

위 사람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0조의3 관련 [별표10의3] (신설 '09.2.6공포, '09.8.7시행)에 따라 석면 조사자 과정 (석면 조사기관)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.

- 석면 조사자과정 - 이론 10시간, 실습 8시간 이상.
- 교육기간 - 2013. 3. 5 - 2013. 3. 7
- 제발급 사유 - 수료증 분실.

2013년 7월 25일

고용노동부 위탁교육전문기관  
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

